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8014 발의연월일: 2022. 11. 1.

발 의 자:이종성·강기윤·박대수

박덕흠 • 백종헌 • 서일준

이명수 · 이인선 · 전봉민

정동만 • 조명희 • 최승재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환 자 유치 사업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법률 제 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 법률 제18622호 의료 해외진출 |
|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
| 법률 일부개정법률 | 법률 일부개정법률 |
| 제31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 제31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
| | 같음) |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 ③ 제1항 및 제2항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 | |